

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乙1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9.

제출자 : 서초구

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주차관련 단속부서의 일원화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분산된 인력·장비의 통합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함 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지방자치법 제102조 (행정기구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- 입법예고 대상 아님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行	개 정 安
제9조(건설교통국에 두는 과) ① 건설 교통국에 건설관리과·토목과·치수 방재과·교통행정과 및 <u>교통지도과</u> 를 둔다.	제9조(건설교통국에 두는 과) ① 주차관리과

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·토목과·치수방재과·교통행정과 및 주차관리과를 둔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